

## ●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-362호

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,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6월 22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###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 고시 폐지(안) 행정예고

#### 1. 폐지 이유
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(시행 2026.1.1.)에 따라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종전의 인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·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인증제와 관련한 고시 폐지 필요

#### 2. 주요 내용

교육과정 인증제 폐지에 따라 ‘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’ 고시 폐지

#### 3. 의견 제출

이 고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13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 안	수 정 안	수 정 사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seojin2018@korea.kr

2)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

3) 팩스 : 044)868-9217

4)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<http://www.epople.go.kr>)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(전화 : (044) 201 - 1591)에 문의하여 주시기  
바라며, 행정예고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([www.mafra.go.kr](http://www.mafra.go.kr)) <국민소통 - 법령정보 - 입법·  
행정예고>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
<p>(2) 전체시간 중 실습 및 현장실습은 30%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, 교육과목별 이론/실습의 구성은 교육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</p> <p>□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기준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4 592 810 1019"> <thead> <tr> <th>교육과목 및 시간</th> <th>주요 교육내용</th> <th>필수 교육시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1)도농교류 관련 법령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업농촌에 대한 가치, 도농교류의 개념과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</li> <li>『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』, 『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』, 『농어촌정비법』, 『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』 등 도농교류와 관련하여 수요자가 알아야 할 관계법령으로 구성</li> </ul> </td> <td>5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>(2)마을경영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마을경영의 이해, 마을경영 자원의 유형별 관리, 마을경영사례, 마을지도자의 자질진단과 역할(리더십)실습, 소독분배, 마을주민의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, 법인경영체 구성과 운영, 농특산물 가공업, 농특산물 소포장 판매, 조직운영 등으로 구성</li> </ul> </td> <td>20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>(3)지역자원 발굴·활용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어촌지역자원의 의의 및 유형과 활용방안, 농어촌지역자원 조사 및 발굴방법, 자원활용 사례, 마을자원의 차별화 전략, 마을자원지도 만들기 등 지역자원 발굴·활용 등으로 구성</li> </ul> </td> <td>20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>(4)홍보·마케팅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마을홍보 개념, 인터넷 등 홍보매체 활용, 마을홍보 및 마케팅 홍보 자료 만들기, 마케팅 등으로 구성</li> </ul> </td> <td>20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>(5)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식품안전 및 환경관리 등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내용 등으로 구성</li> </ul> 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2.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</p> <p>가. 교육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</p> <p>□ 교육프로그램의 구성형식</p>	교육과목 및 시간	주요 교육내용	필수 교육시간	(1)도농교류 관련 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업농촌에 대한 가치, 도농교류의 개념과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</li> <li>『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』, 『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』, 『농어촌정비법』, 『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』 등 도농교류와 관련하여 수요자가 알아야 할 관계법령으로 구성</li> </ul>	5시간 이상	(2)마을경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마을경영의 이해, 마을경영 자원의 유형별 관리, 마을경영사례, 마을지도자의 자질진단과 역할(리더십)실습, 소독분배, 마을주민의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, 법인경영체 구성과 운영, 농특산물 가공업, 농특산물 소포장 판매, 조직운영 등으로 구성</li> </ul>	20시간 이상	(3)지역자원 발굴·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어촌지역자원의 의의 및 유형과 활용방안, 농어촌지역자원 조사 및 발굴방법, 자원활용 사례, 마을자원의 차별화 전략, 마을자원지도 만들기 등 지역자원 발굴·활용 등으로 구성</li> </ul>	20시간 이상	(4)홍보·마케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마을홍보 개념, 인터넷 등 홍보매체 활용, 마을홍보 및 마케팅 홍보 자료 만들기, 마케팅 등으로 구성</li> </ul>	20시간 이상	(5)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식품안전 및 환경관리 등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내용 등으로 구성</li> </ul>	-		
교육과목 및 시간	주요 교육내용	필수 교육시간																		
(1)도농교류 관련 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업농촌에 대한 가치, 도농교류의 개념과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</li> <li>『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』, 『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』, 『농어촌정비법』, 『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』 등 도농교류와 관련하여 수요자가 알아야 할 관계법령으로 구성</li> </ul>	5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	
(2)마을경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마을경영의 이해, 마을경영 자원의 유형별 관리, 마을경영사례, 마을지도자의 자질진단과 역할(리더십)실습, 소독분배, 마을주민의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, 법인경영체 구성과 운영, 농특산물 가공업, 농특산물 소포장 판매, 조직운영 등으로 구성</li> </ul>	20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	
(3)지역자원 발굴·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어촌지역자원의 의의 및 유형과 활용방안, 농어촌지역자원 조사 및 발굴방법, 자원활용 사례, 마을자원의 차별화 전략, 마을자원지도 만들기 등 지역자원 발굴·활용 등으로 구성</li> </ul>	20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	
(4)홍보·마케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마을홍보 개념, 인터넷 등 홍보매체 활용, 마을홍보 및 마케팅 홍보 자료 만들기, 마케팅 등으로 구성</li> </ul>	20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	
(5)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식품안전 및 환경관리 등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내용 등으로 구성</li> </ul>	-																		

현행		개정안	개정사유
구성순서	세부항목		
(1) 제목	○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포함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		
(2) 소개	○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배경, 기본목표 및 기대효과		
(3) 요약	○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된 (4) 진행과정과 (5) 평가를 간략히 기술하고 핵심단어 제시		
(4) 진행과정	○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대상, 교육장소, 교육 가능인원, 교육 소요시간, 준비물 및 주의사항 ○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목표 ○ 교육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배경 및 지식에 대한 정보 ○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(시간) 및 진행시 유의사항 ○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기대효과 ○ 교육프로그램 활동지 및 활동자료(CD 등으로 제작 가능) * 여러 개의 활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.		
(5) 평가	○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대한 서술 ○ 교육진행자 및 참가자의 평가지(평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) ○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및 보고 양식 제시		
(6) 참고자료	○ 주요 소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 ○ 기타 교육프로그램 또는 활동 진행시에 참고할 만한 서적 또는 웹 사이트 주소 등을 제시		
(7) 단어 설명	○ 교육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설명		
<p>나.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시간</p> <p>(1)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, 교육시간은 총 110시간 이상(실습/현장학습 포함)이 되도록 구성하되, 필수 교육시간은 준수하여야 함</p>		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(2) 전체시간 중 실습 및 현장학습은 15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, 교육과목별 이론/실습의 구성은 교육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</p> <p>□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기준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0 592 831 1313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170 592 338 635">교육과목 및 시간</th> <th data-bbox="338 592 741 635">주요 교육내용</th> <th data-bbox="741 592 831 635">필수 교육시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170 635 338 738">(1)농어촌지역 시스템의 이해</td> <td data-bbox="338 635 741 738">• 농어촌 지역의 사회경제 시스템과 공간구조의 특성 이해, 농어촌의 역할과 기능, 선진국 농어촌과의 비교, 교육문화 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등으로 구성</td> <td data-bbox="741 635 831 738">8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70 738 338 895">(2)농어촌지역개발 추진체계</td> <td data-bbox="338 738 741 895">• 사업의 추진체계 및 참여주체의 역할, 농어촌지역개발관련 법령(『농어촌정비법』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, 『환경정책기본법』, 『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』 등), 예산지원체계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</td> <td data-bbox="741 738 831 895">10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70 895 338 951">(3)농어촌지역자원의 가치 창출</td> <td data-bbox="338 895 741 951">• 농어촌 지역자원의 개념, 자원의 유형별 활용방안, 경관의 보전 및 개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</td> <td data-bbox="741 895 831 951">8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70 951 338 1027">(4)농어촌지역 개발 전략계획 및 기획서 작성</td> <td data-bbox="338 951 741 1027">• 농어촌지역개발 전략계획수립 방법, 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, 지역내 활동주체 조직화,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</td> <td data-bbox="741 951 831 1027">16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70 1027 338 1104">(5)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</td> <td data-bbox="338 1027 741 1104">• 지역사회의 구성요소,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과 네트워킹 구축, 갈등관리, 공동체 형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</td> <td data-bbox="741 1027 831 1104">10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70 1104 338 1160">(6)지역경영 및 장소 마케팅 기법</td> <td data-bbox="338 1104 741 1160">• 지역경영 전략, 지역의 브랜드화 및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</td> <td data-bbox="741 1104 831 1160">10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70 1160 338 1206">(7)혁신과 리더십</td> <td data-bbox="338 1160 741 1206">• 지속가능한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성 향상, 리더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</td> <td data-bbox="741 1160 831 1206">8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70 1206 338 1257">(8)농어촌지역 개발 현장교육 및 실습</td> <td data-bbox="338 1206 741 1257">• 현장견학 및 실습, 세미나 등의 내용으로 구성</td> <td data-bbox="741 1206 831 1257">10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70 1257 338 1313">(5)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</td> <td data-bbox="338 1257 741 1313">•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</td> <td data-bbox="741 1257 831 1313"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교육과목 및 시간	주요 교육내용	필수 교육시간	(1)농어촌지역 시스템의 이해	• 농어촌 지역의 사회경제 시스템과 공간구조의 특성 이해, 농어촌의 역할과 기능, 선진국 농어촌과의 비교, 교육문화 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등으로 구성	8시간 이상	(2)농어촌지역개발 추진체계	• 사업의 추진체계 및 참여주체의 역할, 농어촌지역개발관련 법령(『농어촌정비법』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, 『환경정책기본법』, 『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』 등), 예산지원체계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	10시간 이상	(3)농어촌지역자원의 가치 창출	• 농어촌 지역자원의 개념, 자원의 유형별 활용방안, 경관의 보전 및 개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	8시간 이상	(4)농어촌지역 개발 전략계획 및 기획서 작성	• 농어촌지역개발 전략계획수립 방법, 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, 지역내 활동주체 조직화,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	16시간 이상	(5)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	• 지역사회의 구성요소,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과 네트워킹 구축, 갈등관리, 공동체 형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	10시간 이상	(6)지역경영 및 장소 마케팅 기법	• 지역경영 전략, 지역의 브랜드화 및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	10시간 이상	(7)혁신과 리더십	• 지속가능한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성 향상, 리더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	8시간 이상	(8)농어촌지역 개발 현장교육 및 실습	• 현장견학 및 실습, 세미나 등의 내용으로 구성	10시간 이상	(5)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	•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	-		
교육과목 및 시간	주요 교육내용	필수 교육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1)농어촌지역 시스템의 이해	• 농어촌 지역의 사회경제 시스템과 공간구조의 특성 이해, 농어촌의 역할과 기능, 선진국 농어촌과의 비교, 교육문화 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등으로 구성	8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2)농어촌지역개발 추진체계	• 사업의 추진체계 및 참여주체의 역할, 농어촌지역개발관련 법령(『농어촌정비법』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, 『환경정책기본법』, 『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』 등), 예산지원체계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	10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3)농어촌지역자원의 가치 창출	• 농어촌 지역자원의 개념, 자원의 유형별 활용방안, 경관의 보전 및 개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	8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4)농어촌지역 개발 전략계획 및 기획서 작성	• 농어촌지역개발 전략계획수립 방법, 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, 지역내 활동주체 조직화,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	16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5)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	• 지역사회의 구성요소,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과 네트워킹 구축, 갈등관리, 공동체 형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	10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6)지역경영 및 장소 마케팅 기법	• 지역경영 전략, 지역의 브랜드화 및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	10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7)혁신과 리더십	• 지속가능한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성 향상, 리더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	8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8)농어촌지역 개발 현장교육 및 실습	• 현장견학 및 실습, 세미나 등의 내용으로 구성	10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5)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	•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3.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</p> <p>가.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</p> <p>(1)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, 교육시간은 총 90시간 이상(실습/현장학습 포함)이 되도록 구성하되 실습/현장학습 시간은 전체 시간 중 40~50%이내로 구성하여야 함</p> <p>(2) 교육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, 단계별 교육시간의 20%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, 실습/현장학습 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단계별 교육과정</p>		

현행				개정안	개정사유
단계별	교육과목	교육내용	교육시간		
1단계	(가) 주제별 체험프로그램 기획·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어촌체험 및 프로그램의 이해</li> <li>○ 체험프로그램의 주제별 분류 및 특성</li> <li>○ 주제별 체험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이론</li> <li>○ 기획·운영 시나리오 만들기 실습</li> <li>○ 사전·사후 평가 등 기타</li> </ul>	30시간 이상 (이론75% 실습25%)		
	(나) 농어촌체험지도 기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어촌체험지도의 필요성과 지도사의 역할</li> <li>○ 농어촌체험지도기법과 특징</li> <li>○ 체험프로그램 진행기법 및 실습</li> <li>○ 집단활동, 관계형성 훈련, 집단게임</li> <li>○ 진형리더십, 레크리에이션 기법, 유머기법 등 기타</li> </ul>			
2단계	(다) 농어촌체험교육 교재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재(교구)개발의 필요성 및 구성요소</li> <li>○ 교재(교구)개발의 절차</li> <li>○ 교재(교구)의 사례분석 및 만들기</li> <li>○ 교재(교구) 활용방안 등 기타</li> </ul>	30시간 이상 (이론75% 실습25%)		
	(라) 안전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어촌체험의 안전지도</li> <li>○ 농어촌체험시설에 대한 안전 기본지식 및 내용 등</li> <li>○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방법</li> <li>○ 응급처치 이론과 실기 등 기타</li> </ul>			
3단계	(마)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(농어촌체험지도 계획 및 설계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어촌체험지도 계획서 작성</li> <li>○ 체험프로그램 기획·운영 및 체험교재(교구) 만들기 및 지도</li> <li>○ 안전교육, 야외활동 지도</li> <li>○ 체험지도 결과 평가와 종류 등기타</li> </ul>	30시간 이상 (현장학습, 4월 이상)		

나.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,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.

(1) 강의실 : 내벽간 면적(바닥 면적)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30㎡이상, 필요시 칸막이(불연재) 사용가능

(2) 실습실 : 60㎡이상, 필요시 칸막이(불연재) 사용가능

(3) 현장학습장 : 학습자를 수용하여 현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장실습 할 수 있는 공간(농지 또는 마을)을 갖추어야(제시하여야) 함</p> <p>(4) 화장실 : 남녀구분,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</p> <p>(5) 급수시설 :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『먹는 물 관리법』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</p> <p>(6) 방음시설, 채광시설, 환기시설, 냉난방시설 : 학습에 방해되지 않고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</p> <p>(7) 조명시설 : 야간 강의시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 150럭스는 이상</p> <p>(8) 소방시설 :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, 경보설비,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것</p> <p>* 바닥면적 산정 : (공용)복도·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제외, 계산결과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 함</p>	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(9) 기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당, 회의실, 사무실, 자료실, 도서실, 상담실, 컴퓨터실, 방송·통신시설, 보건시설 및 설비시설은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둘 수 있음</p> <p>다. 교육강사는 아래 표의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구성하여야 하며, 교육과목별 전문강사는 각호의 전문강사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강사에 대한 학력, 주요경력,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은 신청서에 첨부·제출하여야 한다.</p>		

현행		개정안	개정사유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교육과목</th> <th>전문강사 자격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1) 주제별 체험프로그램 기획·운영</td> <td>1. 체험프로그램을 3년 이상 개발·진행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.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체험 관련분야(연구, 컨설팅, 교육 등)의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</td> </tr> <tr> <td>(2) 농어촌체험교육 교재 개발</td> <td>3. 레크리에이션 지도자(2급 이상) 자격증 및 미와 동등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4. 체험실습의 강사에 한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2년 이상의 체험지도 경력이 있는 자</td> </tr> <tr> <td>(3) 농어촌체험 지도기법</td> <td>5.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담당 공무원 6.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업무담당 임직원</td> </tr> <tr> <td>(4) 안전교육</td> <td>1. 의사, 간호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2. 대한적십자사, 119구조대 등 구호, 재난 안전관련 공공 기관 재직자 3. 응급구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</td> </tr> <tr> <td>(5) 그 밖의 관련 교육 과목</td> <td>1. 체험프로그램을 3년 이상 개발·진행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. 학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체험관련 분야(연구, 컨설팅, 교육 등)의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. 레크리에이션 지도자(2급 이상) 자격증 및 미와 동등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4. 체험실습의 강사에 한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2년 이상의 체험지도 능력이 있는 자 5.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관련분야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 6.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직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교육과목	전문강사 자격기준	(1) 주제별 체험프로그램 기획·운영	1. 체험프로그램을 3년 이상 개발·진행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.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체험 관련분야(연구, 컨설팅, 교육 등)의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	(2) 농어촌체험교육 교재 개발	3. 레크리에이션 지도자(2급 이상) 자격증 및 미와 동등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4. 체험실습의 강사에 한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2년 이상의 체험지도 경력이 있는 자	(3) 농어촌체험 지도기법	5.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담당 공무원 6.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업무담당 임직원	(4) 안전교육	1. 의사, 간호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2. 대한적십자사, 119구조대 등 구호, 재난 안전관련 공공 기관 재직자 3. 응급구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	(5) 그 밖의 관련 교육 과목	1. 체험프로그램을 3년 이상 개발·진행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. 학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체험관련 분야(연구, 컨설팅, 교육 등)의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. 레크리에이션 지도자(2급 이상) 자격증 및 미와 동등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4. 체험실습의 강사에 한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2년 이상의 체험지도 능력이 있는 자 5.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관련분야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 6.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직원		
교육과목	전문강사 자격기준													
(1) 주제별 체험프로그램 기획·운영	1. 체험프로그램을 3년 이상 개발·진행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.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체험 관련분야(연구, 컨설팅, 교육 등)의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													
(2) 농어촌체험교육 교재 개발	3. 레크리에이션 지도자(2급 이상) 자격증 및 미와 동등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4. 체험실습의 강사에 한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2년 이상의 체험지도 경력이 있는 자													
(3) 농어촌체험 지도기법	5.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담당 공무원 6.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업무담당 임직원													
(4) 안전교육	1. 의사, 간호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2. 대한적십자사, 119구조대 등 구호, 재난 안전관련 공공 기관 재직자 3. 응급구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													
(5) 그 밖의 관련 교육 과목	1. 체험프로그램을 3년 이상 개발·진행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. 학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체험관련 분야(연구, 컨설팅, 교육 등)의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. 레크리에이션 지도자(2급 이상) 자격증 및 미와 동등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4. 체험실습의 강사에 한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2년 이상의 체험지도 능력이 있는 자 5.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관련분야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 6.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직원													
<p>라. 교육평가는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일정기준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.</p>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4.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</p> <p>가.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</p> <p>(1)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, 교육시간은 총90시간 이상(실습/현장학습 포함)이 되도록 구성하되 실습/현장학습 시간은 전체 시간중 40~50%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</p> <p>(2) 교육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 단계별 교육시간의 20%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, 실습/현장학습 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단계별 교육과정</p>		

현행				개정안	개정사유
단계별	교육과목	교육내용	교육시간		
1단계	(가) 농어촌마을의 이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어촌마을에 담긴 사상과 개념</li> <li>○ 농어촌마을의 형성 및 기능</li> <li>○ 농어촌마을과 생활 탐구</li> <li>○ 농어촌마을의 자원 및 특성</li> <li>○ 기타</li> </ul>	30시간 이상 (이론75% 실습25%)		
	(나) 농어촌전통문화 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간과 문화현상</li> <li>○ 농어촌지역의 전통문화 탐구</li> <li>○ 문화해설의 이해</li> <li>○ 농어업과 생활, 놀이, 축제 등을 활용한 마을 해설</li> <li>○ 기타</li> </ul>			
2단계	(라) 마을해설기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마을해설의 목적 및 해설가의 역할</li> <li>○ 마을해설의 체계와 다양한 기법</li> <li>○ 해설관련 자료수집 및 전략수립, 해설자료 제작 등</li> <li>○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</li> <li>○ 진행리더십, 유머기법</li> <li>○ 기타</li> </ul>	30시간 이상 (이론75% 실습25%)		
	(다) 농어촌마을해설 프로그램 개발·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어촌마을해설의 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화</li> <li>○ 농어촌마을해설 프로그램 기획안 작성</li> <li>○ 마을해설 프로그램개발 및 실습(도구 포함)</li> <li>○ 결과 평가 등</li> <li>○ 기타</li> </ul>			
3단계	(마)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(농어촌마을해설계획 및 실제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어촌마을해설계획서 작성</li> <li>○ 마을해설의 진행</li> <li>○ 해설참여 고객의 평가</li> <li>○ 해설이 있는 마을 탐방</li> </ul>	30시간 이상 (현장학습, 4월 이상)		
<p>나.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,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.</p> <p>(1) 강의실 : 내벽간 면적(바닥 면적)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30㎡이상, 필요시 칸막이(불연재) 사용가능</p> <p>(2) 실습실 : 60㎡이상, 필요시 칸막이(불연재) 사용가능</p>				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(3) 현장학습장 : 학습자를 수용하여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공간(농지 또는 마을)을 갖춘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이어야 함</p> <p>(4) 화장실 : 남녀구분,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</p> <p>(5) 급수시설 :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『먹는 물 관리법』 제 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</p> <p>(6) 방음시설, 채광시설, 환기시설, 냉난방시설 : 학습에 방해되지 않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</p> <p>(7) 조명시설 : 야간 강의시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 150럭스는 이상</p> <p>(8) 소방시설 : 『소방법』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, 경보설비,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출 것</p> <p>※ 바닥면적 산정 : (공용)복도·계단 및</p>	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화장실의 바닥면적을 제외, 계산결과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 함</p> <p>(9) 기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당, 회의실, 사무실, 자료실, 도서실, 상담실, 컴퓨터실, 방송·통신시설, 보건시설 및 설비시설은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둘 수 있음</p> <p>다. 교육강사는 아래 표의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구성하여야 하며, 교육과목별 전문강사는 각호의 전문강사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강사에 대한 학력, 주요경력,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은 신청서에 첨부·제출하여야 한다.</p>		

현행		개정안	개정사유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교육과목</td> <td>전문감사 기준</td> </tr> <tr> <td>(가)농어촌마을의 이해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나)농어촌전통문화해설</td> <td>1. 마을해설 프로그램을 3년이상 개발·진행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. 학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마을해설관련 분야(연구, 컨설팅, 교육 등)의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</td> </tr> <tr> <td>(다)농어촌마을해설 프로그램 개발·운영</td> <td>3. 숲해설가 자격증 소지자, 문화유산 해설사로서 해당업무에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. 마을해설실습의 감사에 한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 으로서 마을해설에 2년이상 5회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</td> </tr> <tr> <td>(라)마을해설기법</td> <td>5.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담당 공무원</td> </tr> <tr> <td>(마)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</td> <td>6.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업무담당 임직원</td> </tr> </table>	교육과목	전문감사 기준	(가)농어촌마을의 이해		(나)농어촌전통문화해설	1. 마을해설 프로그램을 3년이상 개발·진행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. 학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마을해설관련 분야(연구, 컨설팅, 교육 등)의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	(다)농어촌마을해설 프로그램 개발·운영	3. 숲해설가 자격증 소지자, 문화유산 해설사로서 해당업무에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. 마을해설실습의 감사에 한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 으로서 마을해설에 2년이상 5회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	(라)마을해설기법	5.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담당 공무원	(마)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	6.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업무담당 임직원		<p>부 칙</p> <p>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
교육과목	전문감사 기준														
(가)농어촌마을의 이해															
(나)농어촌전통문화해설	1. 마을해설 프로그램을 3년이상 개발·진행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. 학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마을해설관련 분야(연구, 컨설팅, 교육 등)의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														
(다)농어촌마을해설 프로그램 개발·운영	3. 숲해설가 자격증 소지자, 문화유산 해설사로서 해당업무에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. 마을해설실습의 감사에 한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 으로서 마을해설에 2년이상 5회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														
(라)마을해설기법	5.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담당 공무원														
(마)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	6.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업무담당 임직원														
<p>라. 교육평가는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있어야 하며, 이에 따른 일정기준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.</p>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
[붙임 2] 개정고시 전문

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 폐지고시안

「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」(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-33호, 2017. 4. 7.)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